

사)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홍종호, 유상희, 임성진	보 도 자 료	“사람·환경·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2018년 8월 16일(목) 즉시 보도가능합니다		
배 포	2018. 8. 16 (목)	
문 의	사무처장 양이원영 010-4288-8402 admin@energytransitionkorea.org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에너지전환포럼, 「재생에너지정책 의견서 제출」

내수시장 확대와 규제합리화를 통한 환경성·수용성 강화

에너지전환포럼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관련 행정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가 미래세대와 지구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를 전환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지난 7월 25일, 에너지전환포럼은 「재생에너지 3020정책 현황과 과제」를 개최했다. 이 포럼에 태양광, 풍력, 시민사회, 지역,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인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의견서에서 OECD 국가의 평균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은 24%에 이르는 반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은 2%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한 내수시장의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환경성·수용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과제로 ■재생에너지구매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 강화와 재생에너지 전기 이용 확대/ ■이익공유제·시민자산화·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수용성·환경성 강화/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대규모 사업 활성화 필요/ ■고효율제품 인증강화 제도 등을 통한 시장확대에 따른 부작용 대응방안 마련/ ■신속한 전력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정적 재원 마련/ ■재생에너지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관련 보험 도입/ ■과제9 풍력 입지규제 합리화/ ■태양광 입지규제 합리화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끝.

* 첨부: 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한 의견서

(사)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전환포럼 "http://energytransitionkorea.org"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서

지난 4차 정기포럼(2018. 7. 25) 「재생에너지 3020정책 현황과 과제」에서 토론된 내용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에너지전환포럼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전환이 한국사회에서도 진행되었다면 원전과 석탄이 줄어들어 더 안전한 에너지수급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2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소통과 토론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기본방향

□ 취약한 내수시장의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

-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17년 기준, 2179GW로 연평균 8.4%씩 증가하였으며,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6년 5886TWh로 2008년 이후 연평균 5.9%씩 증가
- 2017년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시장 투자 규모는 2798억 달러로 전 세계 기술 분야 투자금액 중 최대이며, 석탄가스 분야 투자액 1030억 달러보다 2.7배 높았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6년 기준 2% 수준(폐기물 제외)으로 OECD 회원국의 24% 수준에 크게 못 미침

□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환경성·수용성 강화 필요

- 2016년 전국에서 허가가 반려되거나 보류된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 3건 중 1건은 주민반발에 기인
-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환경피해, 재생에너지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의 소외, 외부인인 사기업의 이익독점 등을 이유로 재생에너지사업에 반대
- 태양광의 경우 입지규제를 가진 기초지자체는 2016년 말 48곳이었으나, 2018년 초 92곳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 환경부도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등을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경사도 기준 25도에서 15도로 강화

Ⅱ 주요 과제

■ 과제1 재생에너지구매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 강화와 재생에너지 전기 이용 확대

-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
 - 현재 국회에는 연간 구매목표량 등을 세워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전기구매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의안번호 2014136).
-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생에너지 전기 구매 유인.

■ 과제2 이익공유제 . 시민자산화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수용성 . 환경성 강화

- 계획입지제도의 경우 40MW 이상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정부의 계획입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 태양광발전의 계획입지제도에 대한 현재 방안은 생태환경적 수용성 확보에 초점이 있으나, 개발이익에 관련된 토지공개념 관점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발전사가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운영에 따른 이익을 공유화하는 이익공유제와 지역 공동체가 재생에너지를 소유·운영함으로써 자가 소비 및 전력 판매의 편

익을 얻는 시민자산화 정책 도입을 통해 수용성 강화 필요.

■ 과제3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대규모 사업 활성화 필요

- 새만금, 매립지 등 대규모 부지는 장기간 제염 및 안정화가 필요함. 신속한 인허가와 함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부지 활용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부지관리 기관에 부지임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과제4 시장확대에 따른 부작용 대응방안

- 재생에너지 시장확대 시 과도한 국토 면적 소요, 중국의 시장 잠식, 저품질 제품으로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기술·품질·가격 경쟁력 강화와 고효율 제품 우대, KS 인증 강화 정책 등으로 대응 필요

■ 과제5 신속한 전력인프라 확충

- 변전소, 변압기, 배전선로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용 계통 부족으로 인한 사업 중단 또는 비용 증가 문제 심각. 신속한 전력인프라 확충 필요



■ 과제6 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정적 자원 마련

- 도로교통 분야에 과잉투자 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배출권거래제 수익 등을 이용하여 재생에너지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보급시설의 AS, 용자, 계통연계비용 지원, 지방보급사업 확대 등의 재원으로 사용
-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6.5% 이내로 되어 있지만 가정용 전력

소비자와 산업용 전력다소비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3.7% 적용되고 있음. 전력다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했을 때 전력소비 비중 60%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산업용 전력산업기반기금 1% 상향조정 시 연간 3,07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되므로 이를 에너지전환 필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음.

■ 과제7 재생에너지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시설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장기간 투자의 부담감 등의 이유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함. 재생에너지 투자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유도

■ 과제8 재생에너지 관련 보험 도입

-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임대를 통해 설치할 경우, 이 설비로 인해 우려되는 건물의 파손 및 기능상실 등 건물 및 시설물 소유자의 재산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제도 도입
- 기업이 재생에너지 시설설치를 위한 대출시 보험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전문 보증보험 운영

■ 과제9 풍력 입지규제 합리화

-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의 경우, 정부 부처 및 주민, 기업, NGO 간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지침 개정 필요.
 - 풍력발전사업 허가 당시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이 인허가 협의 및 허가를 받는 과정(4~5년 소요)에서 1등급 권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최초 등급지로 유지하여 사업추진
- ‘해상풍력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이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며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전반에 대한 인허가 절차의 합리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 더불어 각 정부부처의 허가 및 규제, 이해 상충에 따른 개발 지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2030년 해상풍력 목표 12기가와트 달성이 요원한 상황임.
 - 합리적 해결을 위한 범부처/기관의 단일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소통이 필요함.
- 국방부 내부 규정 등으로 지정된 군레이더, 군사격장 등 관련 정보 조회가 불가능하며, 군협의시 지자체를 통하여 국방부 의견 조회 필요 등 행정소요 추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 필요

- 군레이더 탐지거리는 약 300km 이상으로 ‘탐지 반경이 국내 전 국토에 해당’되어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

■ 과제10 태양광 입지규제 합리화

- 임야 태양광 입지규제가 골프장 입지 기준보다 강화되어서 골프장으로 개발하다가 포기한 부지에도 태양광입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 과도한 토목공사를 제한하고, 토사유실 방지 조치 등을 통해 최소한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태양광 설치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일시사용 20년은 태양광 수명과도 맞지 않음. 태양광 발전 보증기간은 25년이며 현재 기술로도 35년 이상 태양광발전이 가능함. 일시사용기간을 태양광발전 수명에 맞춰 40년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
- 산지관리법 개정관련 20년 후 용지 원상회복 규제는 기간 만료 후 태양광 발전 용량의 감소와 직결됨. 투기와 같은 부작용이 문제라면 용도변경을 잡종지에서 발전용지로 제한해 인정하는 예외 적용 고려할 수 있음. 대체산림조성비 역시 석탄발전, 원전 등 여타 발전사업과의 형평성 필요함
- 지자체들의 거리규제(도로, 민가 이격거리)가 신정부 이후에도 지속 늘어나고 있음. 현재의 태양광 거리규제는 마을단위의 소규모 태양광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임.
- 거리규제의 경우, 잦은 민원 때문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 규제이므로, 환경피해저감 및 주민민원해소 등을 조건으로 규제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함

2018. 8. 14

사단
법인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홍종호·유상희·임성진**



*문의: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양이원영 010-4288-8402
정책팀장 김창민 010-3918-1862